

國際 VAN 서비스교역의 정치경제학

目 次

- I. 序 論
- II. 우루과이 라운드와 電氣通信서비스
 - 1. 戰略的 貿易政策
 - 2. 서비스 貿易과 우루과이 라운드
 - 3. 通信附屬書
- III. 國際 VAN 과 서비스交易
 - 1. 國際 VAN 의 定義
 - 2. 國際 VAN 의 自由化 庄力
 - 3. 規制의 根據
- IV. 效率的인 規制措置의 模索
 - 1. 世界化 및 利用者 需要의 急增
 - 2. 企業內通信：自由化에 숨겨져 있는 칼날
 - 3. 對稱的 規制
- V. 國際 VAN 自由化에 關한 協商
 - 1. 漸進的 自由化의 模型
 - 2. 戰略的 計算
- VI. 展 望
 - 參考文獻

I. 序 論

전통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는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회의 기간구조로 간주되어 왔다. 1970년대까지 전기통신부문의 기술개발이 많은 경우 기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범주는 비교적 한정적이었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공공 또는 규제하의 민간독점자에 의해서만 가장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정은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전기통신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논리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우리는 전기통신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목격하였고 이 추세는 범세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그러한 사태진전에서 기술개발이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기술혁신이라는 단 한가지 요인만이 모든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사태전개에 합리적인 모형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동적인 모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미래의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전기통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에서의 전기통신의 중요한 역할의 발견”으로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경쟁적으로 책정된 가격과 새로이 개발된 전기통신서비스는 관광서비스와 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지역단위로만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종래의 인식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디지털화와 전기통신의 엄청난 전송능력의 증가가 결합하여 서비스가 최소한 재화와 동등하게 교환경제에서 교역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¹⁾

오늘날 은행서비스, 금융, 보험, 운송, 관광서비스, 등에서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이 분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투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점차 전기통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분산된 지점들간에 재고를 배분하고, 현금을 관리하고, 연구센터와 연결하고 또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전달하고 외딴 곳의 설비를 관리하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전기통신서비스는 종종 다른 경제활동에 “기본적인 전송수단(underlying transport mode)”이라고 언급된다.²⁾

전기통신서비스문제를 다룰 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러한 양면성 - 독립된 서비스 분야라는 것과 기본적인 전송 수단이라는 것 - 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국제부가통신망(IVAN) 서비스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II. 우루과이 라운드와 電氣通信서비스

1. 戰略的 貿易政策

여기서는 한 국가가 국제교역에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을 경우 해외경쟁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간단히 증명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A와 B라고 하는 두 국가는 두가지 가능한 선택을 가지고 있다. 즉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open’)과 폐쇄하는 것(‘close’)이다. 두 행동으로부터 얻어지는 payoff는 [圖 1]과 같다. 예컨대 A국의 개방과 B국의 폐쇄로 얻어지는 payoff는(5, 30)이다; 즉 A국은 5만 규모의 payoff를 얻고 B국은 30을 얻는다.

초기상태가 A국의 국내시장은 폐쇄되어 있고 B국민 단독으로 개방한 상태라고 가정하자. A국 시장의 폐쇄에 불만족스러운 B국은 만일 A국이 개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시장을 폐쇄하기로 선언했다고 하자. 이와 같은 선언은 충분히 실현될 만큼의 근거

[圖 1]

	B	개방	폐쇄
A			
	개방	20, 20	5, 30
	폐쇄	30, 5	10, 10

가 있다. 즉 단순한 협박(empty threat)은 아니다. 왜냐하면 B국은 자신의 시장을 폐쇄함으로써 5만 규모의 payoff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상태가 일어나면 A국은 20을 잃게 된다. 따라서 A국은 두나라 시장을 모두 폐쇄한 상태보다는 오히려 “개방”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10만을 잃게 된다. 결국 두나라 모두 개방하는 상태가 실현된다.

(개방, 개방)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B국이 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유인(incentive)은 분명히 있다. 만약 이 게임이 한번 행해지고 마는 것이라면 분명히 (개방, 개방)이 균형이 아니라(폐쇄, 폐쇄)가 유일한 Nash 같은 균형상태이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圖 1]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게임이 무수히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반복게임 이론에서 얻어진 결과는(개방, 개방)에서 얻어지는 payoff가 균형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전 round에서 네가 개방하는 한 나도 개방하겠다”라는 tit-for-tat 전략은 균형전략을 구성하고 있다.³⁾

1) 보다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의 Ungerber (1988) 참조
 2) EC의 1990년 Non-Paper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이 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주요한 전송형태로서의 전기통신 수단”. 때때로 촉진제(facilitator) 또는 수평적 적용(horizontal applica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3) 의장단의 통신부속서(1990)는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서비스 貿易과 우루과이 라운드

2차세계대전 이후 GATT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 교역장벽제거를 위한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개최해 오고있다.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지난 40년동안 세계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해 왔다. 자유무역 경제학의 신봉자들은 이런 것들이 더욱 자유화된 무역환경의 귀결이라고 쉽게 결론내릴지도 모른다. 그런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와는 관계없이, 다른 중요한 관찰결과, 이 기간동안 최대 무역국인 미국의 경쟁적 우위가 대부분의 제조업부문에 침식당했으며 경쟁적 우위가 신흥공업국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다른 선진국은 국제교역량은 점점 증가되나 국가간 무역규범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서비스부문에 그들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GATT 체제하에서 여덟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의제로서 서비스부문을 포함 시킴으로써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데에 일단은 성공하였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상목적은 “명료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하에서 발전도상국의 발전과 모든 무역참가국의 경제성장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무역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개별서비스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원칙을 만드는 노력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다자간 무역원칙 및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⁴⁾

그러나 다른 협상에서와 같이 GNS (서비스협상 그룹)는 협상 초기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의 두 그룹으로 양분되었다. 선진국은 다국적기업들을 배경으로 서비스교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자유화는 불가능하더라도 보다 자유로운 서비스교역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대부분의 경우 유치산업의 단계에 있거나 때로는 아직 생성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 通信附屬書

1988년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 중간평가를 위한 각료회의에서 투명성, 점진적 자유화,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개도국 참

여의 증대, 긴급수입제한 그리고 예외조항과 규제사항등과 같은 일련의 원칙을 확인했다. 그리고 전기통신을 포함한 몇개의 서비스부문을 선정하여 GNS에서 채택될 서비스교역의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1990년 12월말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를 앞두고 협상자들은 관련 무역국들의 공정경쟁 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고안해 내야 한다. 그 모형은 효율적인 시장접근과 점진적인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차후의 협상을 위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는 모형이 모든 서비스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어야 함과 아울러 특정 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NS의 협상요구(mandate)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 시장접근은 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핵심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접근이란 관련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전기통신망을 포함한 국가유통망에 접근하는 것과 현지에 상업적 주재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양면성을 논의할 때, 동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본전송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공중통신망과 공중서비스는 많은 경쟁적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초가 되며,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및 기반구조에의 접근과 이용은 일정한 공약(Commitment)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이 통신부속서 작성의 전반적 의의이다.⁵⁾

Ⅲ. 國際 VAN 과 서비스교역

1. 國際 VAN 의 定義

국제 VAN이라는 용어에 대해 통일된 정의는 이루

4) UR 각료선언, 폰타 델 에스떼, 1986.9.

5) GNS 초기회의에서는 일반협정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에 관해 독립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부문부속서를 채택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치는 동안 여러가지 정의가 등장하였지만 각기 국내 규제 제도의 상이점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었다. 본 고에서는 국제 VAN 서비스를 국제전용회선에 구축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국제 VAN 서비스를 느슨하게 정의 함으로써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사업으로서의 국제 VAN 과 더불어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국제 VAN 의 이용 측면도 다루어야 한다. 현재 국제 VAN 서비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 사이에서 쌍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2. 國際 VAN 의 自由化 壓力

CCITT 의 D1권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사설 통신회선의 임대 조건은 다른 서비스부문의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기업들은 D1 권고를 너무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D1 권고에서는 사설전용회선은 고객의 본래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회선의 사적 이용보다 공적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공중사업자는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해 전용회선을 일시적으로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공중사업자는 부가서비스사업자의 장비를 공중사업자의 구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전용회선의 재판매 및 공동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회선의 상업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이러한 제한들이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현대적이고 정교한 자동차를 공급하면서 자갈길이나 진흙길 위로만 주행하도록 하고, 이용상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덧붙이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감내할 수 없다. 그러나, 전기통신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 기업 이용자들은 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 있다.”⁶⁾

그들은 유휴 시설용량을 공동사용 또는 재판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길 원한다. 그리고, 전기통신 기반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하며, 통신망을 그들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길 원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되거나 이용가능한 프로토콜이 그들의 필요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려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전용회선을 최소한의 규제하에서 가능한 한 자유롭게 사용하길 원한다.

3. 規制의 根據

그러면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제한을 철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규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국내사업자의 재무적 존립 가능성과 통신망의 국제적 접속의 확보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의 사설통신망이 전화서비스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서비스는 비경쟁적서비스로서 독점적 공중통신사업자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유휴설비의 재판매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전용회선의 재판매업자는 크립스키밍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재판매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지지않기 때문에 공중통신사업자는 경쟁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한편, 많은 사설망이 독립적으로 설치된다면 기존 통신망의 보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데이터교환)는 가장 유망한 국제 VAN 서비스의 하나로 각광 받고 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문서작업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가치의 4~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의 대기업이 연간 3백만 달러의 송장을 보내고, 하나의 송장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10 달러라고 가정하자. 송장의 전자적 처리에 의해 문서작업의 비용을 1/3로 줄일 수 있다면 연간 천만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EDI 는 산더미 처럼 쌓이는 서류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지만 국제표준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전자적 바벨탑을 초래하게

6) Nicholas (1990)에서 인용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규제자들은 국제 VAN 사업자가 유보된 기본서비스 부문에의 참여를 배제하고,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은 그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와같은 정당한 목적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다음 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V. 效率的인 規制措置의 模索

1. 世界化 및 利用者 需要의 急増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때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불안정하며 불충분한 전기통신 기반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 국가의 시장에 침투해가기 위해서 외국기업은 전기통신 기반구조에 무차별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접근 및 이용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행위로부터 양(positive) 또는 음(negative)의 잠재적 댓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나타낼 수 없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교역협상자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절대가치로 1인당 댓가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룹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가설에 비추어 볼때 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은 사업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켜 가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동원하여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단체중의 하나가 300개 이상의 미국계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 국제사업위원회(U. S. Council of International Business)이다. 이 위원회는 1988년 4월에 "Value-added and Information Services : An Industry Review"와 1989년 11월에 "U. S. Industry Proposed

Approach for a GATS Applicable to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Sector"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GNS 통신서비스협상 및 UR 통신전문가회의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2. 企業內通信 : 自由化에 숨겨져 있는 칼날

미국이 제안한 통신부속서는 서비스산업계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사업의 수행을 위한 공중전기통신 전송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services : PTTS)에의 접근 및 이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더우기 미국의 제안은 기업내통신을 위한 PTTS에의 접근 및 이용을 확보하려는 모든 기업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⁷⁾

기업내통신의 정확한 의미는 협상상대국간에 논쟁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해석에 의하면 기업내통신은 "관련회사(affiliates)를 포함하는 단일 기업내에서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개념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통신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만약 제3자에게 제공된다면 기업내통신이 아니라 제3자서비스가 될 것이다."

상기 정의에서 관련회사(affiliates) 및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offered to a third party for a profit)"이라고 하는 두가지 중요한 개념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회사와 비관련회사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며, 누가 그 구분을 할 것인가?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된 개념이 없다면 그와 같은 애매한 정의는 끊임없는 논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댓가없이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이것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공급업자가 복수의 서비스를 패키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패키지에 대한 서비스 요금이 일정하다

7) 미국과 일본의 초기 협정에서는 CCITT 권고 X.75를 준용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X.75대신에 독자적인 프로토콜의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협의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총요금을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것은 완전히 자의적이 된다. 즉, 각 요소별 요금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살펴 보자. 은행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e'라는 회사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세계 각처에 지사를 두고 있다. Globe는 X 국가에 곧 새로운 지사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X국에서 Globe와 구좌를 개설하고 일정 예금잔고를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세계 각국의 Globe 지사로 매달 2시간의 국제전화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정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국제전화의 무료서비스는 기업내통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기업내통신이 될 수 있는가? 이 경우에 Globe 고객에 대한 무료전화서비스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Globe는 징수해야 할 요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패키지 서비스에 대한 총요금이 일정하다면 총요금을 은행, 보험 및 전화서비스로 정확하게 배분하는 문제는 Globe에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내서비스를 미국의 제안대로 정의한다면 기업내통신의 범위는 이론적으로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제3자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업내통신을 이와 같이 정의하게 되면 독점 또는 배타적 서비스로 유보되어 있는 국제전화서비스가 상기 예의 X국에서는 사실상 자유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對稱的 規制⁸⁾

사실상의 (de facto) 자유화 가능성에 직면하여 전기통신 기반구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수단으로서 대칭적규제의 개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개념은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 비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유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⁹⁾ 일부

의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를 일방적 또는 관련 무역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보서비스로 지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음성전송 및 텔렉스서비스와 같은 기본서비스를 기반전기통신서비스로 간주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i) 다른 종류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

ii) 기본서비스의 자연독점성

iii) 보편적서비스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

iv) 국가안전에 대한 고려

유보(reserved)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는 무언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보서비스의 사실상 자유화는 규제의 악몽과 같은 것이다.

앞에서의 사업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볼때, 유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 비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확한 범위, 특히 기업내 통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국가가 기본전기통신서비스를 유보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애매하게 정의된 기업내통신은 공중망을 우회(bypass)하게 되고, 공중통신사업자 수익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유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전기통신 및 비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칭적 규제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무차별적 취급은 비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유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유보서비스를 제

8) 이 부분은 GNS 통신실무회의에 제출한 한국의 NON-PAPER를 토대로 하고 있다.

9) 본문에서 유보서비스라는 용어는 그러한 서비스에의 접근을 통해 전송양식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V. 國際 VAN 自由化에 관한 協商

1. 漸進的 自由化의 模型¹⁰⁾

GNS 일반협정의 초안에 따르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는 서약(commitment)의 협상부문에 해당된다. 서명국은 점진적으로 높은 차원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협상을 수행해가게 된다. 그와같은 양허협상을 통해 서비스교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허협상은 특정 서비스부문과 관련된 공급양식(mode of delivery)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4가지의 공급양식이 확인되고 있다. 국경간제공, 사업적 주재, 소비자의 이동이 그것이다. 노동력의 이동, 각각의 공급양식에 대해서

- i) 시장접근의 제한, 조건 및 유보
- ii) 내국민대우의 조건, 자격, 유보
- iii) GNS에서 협의될 다른 규정에 관한 사항 상기의 사항에 관해 협의되어야 한다.

2. 戰略的 計算

국제 VAN에 있어서 적절한 공급양식은 서비스의 국경간제공과 사업적 주재가 될 것 같다. 국경간제공은 때때로 비설립(non-establishment)으로 표현되어 사업적주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설립(establishment)과 대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간제공 및 사업적주재에 관한 정확한 의미는 GNS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국제 VAN 사업자는 통신선로의 양측 단말에서 설립(presence)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그 사업자는 국제회선의 양측 단말에서 국제공중사업자로부터 국제전송설비를 임대한다. 국제 VAN 사업자와 국제회선의 한쪽 단말의 고객과는 거래가 없을 수도 있으며, 국제 VAN 사업자와 회선의 양측 단말의 고객들과는

거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국제 VAN이 자유화되었다는 것은 회선의 양측 단말에서 VAN 서비스가 이미 자유화되었거나 동시에 경쟁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통신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VAN 서비스 시장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협상자들에게는 국제 VAN 협의라는 것이 딜레마가 되고 있다.

협상과정을 통해 두가지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하는 선진국과 보편적서비스의 달성에 정책적 우위를 두고 있는 개도국과의 갈등, 유보서비스를 보호하려고 하는 공중통신사업자와 전용회선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기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국제 VAN 사업자와의 갈등이다.

서비스 및 재화의 교역에 있어서 국제 VAN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기 위해서 국제 VAN은 경쟁 가격으로 이용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외부의 교역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각국은 국제 VAN 시장의 폐쇄를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2.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러한 시장의 폐쇄는 최적 대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자유화의 범위와 시기로 압축된다. 4.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칭적 규제는 전기통신 기반구조가 확충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I. 展 望

네트워크의 경제성에 의해 국제 VAN과 연결되는 국가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국제 VAN에 참여하는 효익은 증대한다. 쌍무협상을 통해 국제 VAN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관행은 GATS 체계의 다자간협상으로 보완될 것이다. 다자간협상은 쌍무협상에 비해 보다 많은 협상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자간협상은 협상기간이 보다 장기적이고, 각국의 경제발전 단

10) 이 부분은 MTN. GNS/15(1990)에 근거하고 있다.

일 수 있다. 개도국들은 다자간협상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인내심이 적은 선진국들은 곧 쌍무협상으로 전환할 것이다.

계를 반영한 규제정책의 차이로 인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다. 자유화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개도국에게는 상당히 매력적

參 考 文 獻

1. Nicholas , Derek “ITU , GATT and Global Business Telecom Needs”
Transnational Data and Communications Report , February , 1990.
2. Pipe , Russell ,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Counties in Uruguay Round Negotiations”
UNCTAD/UNDP International Project , July , 1989.
3. Stern , Peter ,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ystem”
Atwater Project on the Impact of Telecommunication and Data Services on Commercial A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 March , 1990.
4. Ungerer , Herbert , Telecommunication in Europe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88.
5. Ypsilanti , Dimitri , “Trade in Telecommunication Network-based Services” Paper presented to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8 th International Conference , Venice , 1990.
6. “Chairman ’ s Draft Telecom Annex ” MTN . GNS/Telecom WG , October , 1990
7. “Draft Multilateral Framework for Trade in Services ” MTN . GNS/ 35 , July , 1990
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Network-based Services : Emerging Market Structures ”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 OECD , November , 1989.
9.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Annex : Access to and Use of Service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s ” MTN . GNS/W/ 97 , March , 1990.
10. “EC Non-Paper : Telecommunications Annex to the General Framework on Trade in Services ” June , 1990.
11. “Korean Non-Paper on Telecommunications Annex ” July , 1990.